

# 재가노인복지시설(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9-11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9월 일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을 위해 주·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(데이케어센터)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민간위탁의 목적

- 1)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생활 밀착형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이용대상 노인 및 보호자 만족도 제고
- 2) 데이케어센터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

### 나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기간: 5년
- 2) 위탁운영 시설현황
  - 시설명 : 아현데이케어센터(가칭)
  - 위치 : 마포구 마포대로11길 44-81(아현문화건강센터 지하1층 지역커뮤니티센터)
  - 면적 : 317.25m<sup>2</sup>
- 3) 위탁사무 범위 : 재가노인복지시설(데이케어센터)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- 4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5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구성)

#### 다. 추진일정

- 1) 공개모집 공고 : 2019. 9. 30.
- 2) 신청서 접수 : 2019. 10. 15 ~ 10. 22.
- 3) 선정 심사 : 2019. 10. 30 ~ 11. 6. (기간 중 1일)
- 4) 심사결과 발표 : 2019. 11. 8.
- 5) 협약 체결 : 2019. 11. 20.
- 6) 위탁 운영 : 2019. 12. 1 ~ 2024. 11. 30. (5년)

#### 라. 소요예산

- 1) 시설설치비(내부리모델링공사 등) : 270,000천원(시비 100,000천원, 구비 170,000천원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#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, 운영 및 관리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#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###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